경영유의·개선사항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5. 12. 30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대리점	개선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미승인 안내자료 등 점검에 관한 사항

㈜서울기업금융서비스 일부 지점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영업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였는데, 동 자료에 보험상품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,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보험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.

따라서 회사는 자체 교육자료에 대하여 심의 절차를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고,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점의 교육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, 보험모집에 사용하는 보험안내 자료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에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